



: 2016-08-05

## 춘천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6가소1301 손해배상금  
원 고 A  
피 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7.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6.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B 차량의 피보험자 C이 2014. 9. 27. 13:20 포천시 내촌면 신평리 서파사거리 고가대로 아랫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외에서 진입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원고가 운전하여 직진하던 원고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 위 사고가 C의 과실로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은 원고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따라서 C이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는 원고에 대해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과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의 교환가치가 6,010,000원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승용차의 파손부위의 수리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4,909,244원만큼 이 사건 승용차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



42883 판결 참조).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이 20%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927,395원(= 4,909,244원 × 0.8,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